##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종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31 발의연월일: 2024. 10. 10.

발 의 자:김종양・윤영석・김태호

조승환 · 최형두 · 서천호

윤한홍 · 김성원 · 이종욱

서일준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 산업 경제의 제조업 중심지인 경남 지역은 관련 산업의특성상 금속 절삭 등 기계 가공의 공정이 많은 만큼 이 과정에서 수용성 절삭유 등의 사용이 불가피함. 현재 경남도 내에만 11,530여개의 금속가공제품제조 관련 기업이 운영 중에 있으며,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 시 발생한 폐수를 대부분 전량 위탁 처리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.

그런데, 현행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제7항 및 제8항의 적용을 받는지역내 산업단지의 경우,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최초 입주가 제한되거나 당초 입주한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원료·생산공정 변경 등으로 특정수질오염물질 발생 시 시설폐쇄 등의 행정규제를 받으므로 인해 기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임.

또한 곧 조성될 창원 지역의 방위산업, 원자력 분야의 신규 국가산 단 입주 공장들은 기계산업의 특성상 절삭유 사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, 국가산단 및 국가 산 업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것임

이에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제7항 및 제8항의 적용을 받는 공장이라 하더라도 수용성 절삭유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단지 내에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발전과 원활한 기업활동 도모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산업단지 내 입주 업체에 관한 특례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단지에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공장이 수용성절삭유 사용으로 배출되는 폐수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21조의2(산업단지 내 입주 업체
	에 관한 특례) 「산업입지 및
	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
	제7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단지
	에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공
	장이 수용성절삭유 사용으로 배
	출되는 폐수를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기준에 따라 전량 위탁하
	여 처리할 경우 입주를 허용할
	<u>수 있다.</u>